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 (GRN)

해외 공동연구비 집행 및 관리방안 10問 10答

1 해외 연구비 집행은 어느 규정과 기준을 적용하나요?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을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연구비 집행의 경우 동 규정을 근간으로 사업 신청요강(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시 첨부하여 공지)과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집행과 관리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2 해외 연구비 집행에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공고시 공지된 ‘신청요강(국문 및 영문)’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1) 해외에 한도액을 설정한 “국제통용 연구비(법인)카드”를 발급하여 해외 공동연구자에게 제공하여 직접비를 집행토록 하고, 인건비는 국내 주관기관에서 해외송금하는 방식과 2) 해외와의 협의(관련 협약체결 등)하에 해외 연구비 해당분을 일괄 송금 후 연차별로 정산처리(해외→국내 주관기관)하는 방식입니다.

3 주관기관과 해외기관과의 협약체결은 필수사항 인가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해외기관과의 협약체결은 상기 두가지 방식 중 특히 2)의 해외 송금시 필요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해외에서 연구비 집행 후 정산처리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연구비 송금 전 국내 주관기관에서 상기 1번 문항에서 언급된 규정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내의 관련 규정과 기준을 해외 연구자측에서 준수하고 이에 따른 적정한 연구비 정산처리가 목적이니 협약의 유무가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 연구비 송금 후 정산처리시 해외로부터 집행내역(영수증 등)을 받는 등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협약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협약체결의 특정한 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워낙 해외 기관별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비 관리가 이뤄지는 바 특정한 양식을 제공해 드리지 않고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상한액은 조정이 가능한가요?

상기 1번 문항에서와 같이, 해외 연구비 집행 및 관리는 해당 근거규정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상한액도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요강에 별도로 제시된 신분별(박사급연구원, 학/석/박사과정생)금액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5 해외 연구비 중 기기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상기 4번 문항과 같은 맥락의 사안으로서, 사업 신청요강에 해외 연구비 집행대상 항목에는 직접비와 인건비에 한정하며, ‘직접비’ 중 ‘기자재 구입비’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6 해외 연구기관에서 간접비를 요청하는데 집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 신청요강에 명시된 사안입니다.
 해외 연구기관 중에는 국내 연구지원기관(연구재단)에서 간접비 지급을 제안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 인정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간접비 집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고로 해외 연구비 중 인건비를 국내 주관기관에서 직접 해당 연구자별로 해외송금 처리하고, 직접비는 카드발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간접비 소요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기관을 통한 일괄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주관기관에 지급된 간접비 중 일부를 지급하는 방법만이 있습니다.

7 해외 연구비 송금시 환율차이에 따른 수수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동 사업에서 당초 연구비 계상시 원화단위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산하므로, 특별히 환율차이에 따른 금액 등락폭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급된 연구비 한도를 고려하시어 적정히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외 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8 총 연구비 중 해외연구비 비중의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입력한 국내와 해외연구비간 비중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초의 연구계획과 내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연구비 집행과 정산은 결국 해당 항목별 총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연구진행과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연구비와 해외연구비의 비중은 항목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물론 관련 규정과 협약에 명시된 전용기준(인건비의 직접비로의 전용 불가 등)에만 부합하면 다른 비목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9 해외 연구비도 연차별 이월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기 8번의 문항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차별 이월은 동일 항목내에서 차년도로의 이월이 가능하며 이는 국내와 해외연구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항목의 전체 연구비를 기준으로 처리하는 사안입니다.

10 해외 연구비 정산은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해외 연구비 집행관리는, 국내 주관기관과 국내 공동연구기관간 정산처리시의 관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해외 연구비를 포함한 전체 연구비에 대한 정산처리를 완료하고 재단 홈페이지 연구관리시스템(오름)을 통해 정산결과를 온라인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관련 증빙의 보관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해외에 카드를 발급해 주고, 인건비를 송금처리 하는 경우에는 정산처리 자체가 직접 국내 주관기관에서 이뤄지므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일괄 송금 후 정산처리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산내역과 관련 증빙을 주관연구기관에서 받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 연구기관측에서 간혹 영수증 원본을 보내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본을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